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579호

의 안 명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대 상 기 관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6. 7. 25.

주 문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25일

위원장	성영훈	_____
위원	김인수	_____
위원	곽진영	_____
위원	이상민	_____
위원	최학균	_____
위원	박창수	_____
위원	신근호	_____
위원	노재석	_____
위원	정갑생	_____
위원	양재영	_____
위원	이현수	_____
위원	김종보	_____
위원	허용석	_____
위원	전준경	_____
위원	이호용	_____

【별지】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2016.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① 관련제도	2
② 일반현황	3
III . 현황 및 문제점	5
① 종량제봉투 사용불편	5
②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및 판매소 이용 등 불편	13
IV . 개선방안	15
①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15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15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15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용편의 제고	18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18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18
V . 조치사항	19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 일상생활에 불합리한 관행근절
- ※ 최근 3년간(2013. 1.~2015. 12.) 국민신문고에 총 6,325건의 고충민원 제기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시행**

※ 1994년 4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5. 1. 1.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 하지만,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라도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초래

-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생활폐기물 투기로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8만원) 부과

※ 다만, 전입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할 경우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의 전출입자라도 스티커 부착에 따른 이용불편, 예산증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소극적 참여

- (이용자) 전입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 배출, 교환 및 환불 곤란 등으로 불편 초래

※ 동일광역시 내에서 전출입하는 인원은 연간 약 255만 명(104만 세대로 추정, 70.0%)

- (자치단체) 예산소요, 부착여부 확인곤란(기계식 수거, 야간수거 등), 소각시 유해가스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소극적 참여

※ 연간 1,000~2,000만 매(가구당 10~20매) 제작, 연간 소용비용 10~20억 원(매당 50원)

○ 이에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상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성 제고 및 민원해소

☞ 추진경과: 계획수립(3월), 실태조사(4월), 토론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인건상정(7월)

II.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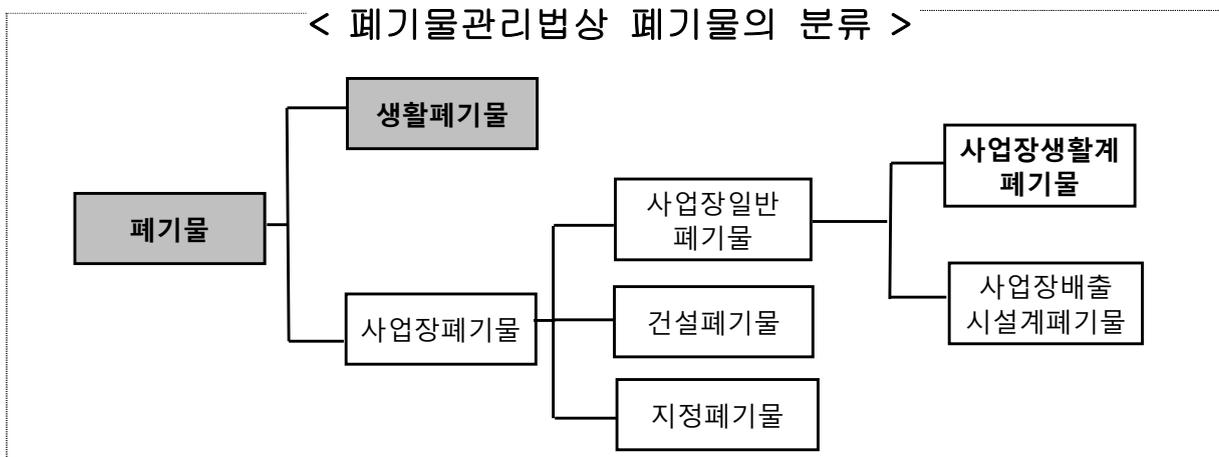
1 관련제도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량 억제, 배출·처리,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절약·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자원 재활용 촉진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허가처리에 필요한 사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리 수수료,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규정

□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이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폐유·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폐기물관리법」 제2조)



□ 관리주체별 주요업무

관 리 주 체	주 요 업 무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적·재정적 지원
광역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책무 수행

2 일반현황

□ 인구 및 세대현황

○ 최근 3년간 인구 및 세대 변화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총인구수	세대수	총인구수	세대수	총인구수	세대수
전 국	51,141,463	20,456,588	51,327,916	20,724,094	51,529,338	21,011,152
서울특별시	10,143,645	4,182,351	10,103,233	4,194,176	10,022,181	4,189,948
부산광역시	3,527,635	1,404,663	3,519,401	1,421,648	3,513,777	1,437,818
대구광역시	2,501,588	960,265	2,493,264	970,618	2,487,829	982,360
인천광역시	2,879,782	1,118,988	2,902,608	1,136,280	2,925,815	1,154,004
광주광역시	1,472,910	563,599	1,475,884	573,043	1,472,199	580,427
대전광역시	1,532,811	584,877	1,531,809	592,508	1,518,775	597,008
울산광역시	1,156,480	431,595	1,166,377	442,250	1,173,534	451,688
제주특별자치시	593,806	238,465	607,346	246,516	624,395	256,928
소 계	23,808,657	9,484,803	23,799,922	9,577,039	23,738,505	9,650,181
비 율	46.6%	46.4%	46.4%	46.2%	46.0%	45.9%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종량제봉투 판매매수 및 판매금액 현황

○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판매매수 및 판매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매,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	
	판매매수	판매금액	판매매수	판매금액	판매매수	판매금액
전 체	705,334	437,681	732,464	463,004	666,675	436,686
서울특별시	168,115	81,685	184,646	95,476	169,061	87,495
부산광역시	38,533	30,220	35,861	28,403	37,488	29,247
대구광역시	33,046	17,201	33,565	17,521	37,311	19,430
인천광역시	36,144	25,229	34,298	23,116	34,269	24,486
광주광역시	16,083	16,226	16,593	15,882	16,385	16,500
대전광역시	20,027	16,781	18,752	16,022	16,078	15,092
울산광역시	19,467	14,173	20,633	14,754	6,022	8,221
제주자치도	9,273	5,493	9,271	5,225	10,854	6,460
소 계	340,688	207,008	344,348	211,174	316,614	200,471

자료) 쓰레기 종량제 현황, 환경부

□ 폐기물 수거현황

○ 최근 3년간 폐기물 종류별 수거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 5,329,382	13,928,70	13,927,117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	소 계	5,924,774	5,916,819	6,126,471
	가 정	5,296,029	5,307,162	5,627,232
	사업장	3 82,134	390,644	323,510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배출불명	2 46,611	219,013	175,730
	소 계	4,232,010	4,135,349	4,269,307
	봉 투	892,267	1,215,617	1,305,665
용기 등	3,339,743	2,919,732	2,963,642	
대형폐기물	5 09,298	498,584	550,739	
공사장 생활폐기물	2 74,076	273,942	333,769	
재활용품	4,203,958	2,955,470	2,535,987	
기 타	1 85,266	1 48,539	110,845	

자료) 쓰레기 종량제 현황, 환경부

Ⅲ.

현황 및 문제점

1. 종량제봉투 사용 불편

【현황 및 문제점】

가. 종량제봉투 사용구역 제한에 따른 불편가중

-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 이하)이 처리하도록 위임(「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치단체장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운영
 - 종량제봉투의 가격, 규격, 제작·판매, 수거방법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하지만,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 타 기초자치단체(구·군)의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없어 불편

*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광역시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라도 타 구·군의 종량제봉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자치단체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8만원을 부과함

※ 부산광역시(도·농 복합도시인 강서구, 기장구 제외)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종량제봉투 사용의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전입자에 한 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하면 사용 가능

※ 스티커 배부량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가구당 10매 또는 20매 지급

※ 일부 자치단체는 스티커부착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업자의 묵인 하에 수거·처리

<주요 민원사례>

- ▶ 타 지역으로 이사시 사용하다가 남은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가져가 새로운 거주지에서 아무런 추가조치 없이 즉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15. 10.)
- ▶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집에서 쓰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니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국민신문고, '15. 6.)
- ▶ ○○○○시 A구에 살다가 B구로 이사했는데 이전에 쓰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봉투 몇 천원 환불받자고 한 시간씩 지하철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15. 4.)
- ▶ ○○광역시 A구에서 B구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종량제봉투 모두를 버려야하는 상황이다.(국민신문고, '15. 4.)

나.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의 전출입자도 스티커 부착에 따른 불편초래

- (이용자)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전출입을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 센터를 방문,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배출해야하는 불편초래
 - 전국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로 전입한자(약 364만 명) 중 약 70.0%에 해당하는 연간 약 255만 명(104만 세대로 추정)이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이동
 - 하지만, 전입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자 배출 종량제봉투 확인증(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야만 전출지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 전출입은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스티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방문 해야 하는 불편요소 내재

<2015년도 광역시별 인구 및 전출입자 현황>

(단위: 명, 세대)

구 분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 구	전입자수 (전국→광역시)	전출자수 (광역시→전국)	동일 광역시 내의 전출입자수	전입세대수 (추정)
합 계	23,738,505	9,650,181	2.50	3,635,005	3,804,388	2,545,234 (70.0%)	1,036,447
서울특별시	10,022,181	4,189,948	2.39	1,589,431	1,726,687	1,129,529 (71.1%)	472,606
부산광역시	3,513,777	1,437,818	2.44	507,031	520,591	376,345 (74.2%)	154,240
대구광역시	2,487,829	982,360	2.53	351,424	364,364	259,185 (73.8%)	102,445
인천광역시	2,925,815	1,154,004	2.54	473,223	463,685	314,622 (66.5%)	123,870
광주광역시	1,472,199	580,427	2.54	224,603	233,875	150,777 (67.1%)	59,361
대전광역시	1,518,775	597,008	2.54	220,774	241,390	139,609 (63.2%)	54,964
울산광역시	1,173,534	451,688	2.60	170,393	170,473	116,131 (68.2%)	44,666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256,928	2.43	97,580	83,323	59,036 (60.5%)	24,295

자료) 인구수, 세대수: 광역시별 홈페이지
전출입자수: 통계청

※ 전입세대수(예측)= 동일 광역시내 전출자수 ÷ 광역시별 세대당 인구

※ ()는 광역시 거주자 중 동일 광역시로 전출입자 비율(동일 광역시 내의 전출입자 수 ÷ 전입자수)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스티커>



- (자치단체) 스티커 제작예산 증가, 국민 불편초래 등의 이유로 다수의 자치단체 미 참여에 따른 실효성 저하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전출입자를 위한 스티커 제작비용이 연간 총 약 6~12억 원 소요에 따른 예산증가
 -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전출입자를 위한 스티커 제작매수는 연간 약 1,037만~2,075만매 소요
 - 종량제봉투를 수거통에 넣어 배출·수거하는 거점수거·기계식수거·야간수거 방식 등의 운영으로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곤란
 - 종량제봉투 소각시 스티커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스티커 부착제도 도입에 소극적

<전입자용 스티커 제작매수 및 소요예산(추정)>

(단위: 세대, 만매, 천원)

구 분	전입세대수	스티커 제작매수	스티커 제작비용
합 계	1,036,447	1,037 ~ 2,075	62,220 ~ 124,500
서울특별시	472,606	473 ~ 946	28,380 ~ 56,760
부산광역시	154,240	154 ~ 308	9,240 ~ 18,480
대구광역시	102,445	103 ~ 206	6,180 ~ 12,360
인천광역시	123,870	124 ~ 248	7,440 ~ 14,880
광주광역시	59,361	59 ~ 119	3,540 ~ 7,140
대전광역시	54,964	55 ~ 110	3,300 ~ 6,600
울산광역시	44,666	45 ~ 90	2,700 ~ 5,400
제주특별자치도	24,295	24 ~ 48	1,440 ~ 2,880

※ 스티커 제작가격은 스티커 규격 가로18cm×세로10cm 기준 매당 60원으로 계산

<자치단체의 주요의견 내용>

- ▶ 광역시별로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사용의 단일화를 통해 국민편의제공(국민권의위원회 실태조사, '16. 2.)
- ▶ 최소 광역시 내에서는 가격 및 규격을 단일화하여 관내 전입시 기존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국민권의위원회 실태조사, '16. 3.)
- ▶ 전국적 혹은 각 광역시 단위라도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규격, 색깔 등을 통일화하여 주민들이 이사 시 스티커 부착절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민권의위원회 실태조사, '16. 3.)

다.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종량제봉투 규격 상이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라도 기초 자치단체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이 달라 혼란초래
 - 종량제봉투 규격은 자치단체별로 다르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5 l , 10 l , 20 l , 50 l 의 종량제봉투를 제작·사용

- 하지만, 3ℓ 이하 및 30ℓ, 75ℓ, 100ℓ의 종량제봉투는 동일 광역시 내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제작·사용 여부가 상이하여 혼란초래

※ 광역시 관할 76개 기초자치단체 중 종량제 봉투별 사용비율은 3ℓ 이하 23.7%(18개), 30ℓ 64.5%(49개), 75ℓ 55.3%(42개), 100ℓ 86.8%(66개)

○ 가구형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격사용으로 자원낭비 초래

- 가구형태는 핵가족화, 1인 가정 증가에 따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소형화 추세이나,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5ℓ 이상으로 제작·판매하여 보관공간 협소, 냄새, 실내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조기 배출에 따른 자원낭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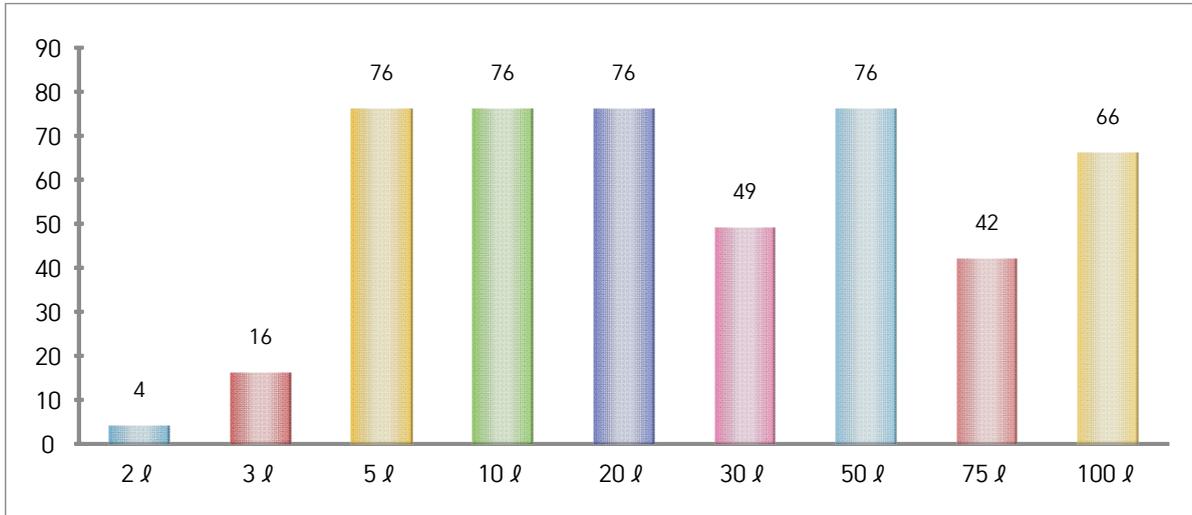
<광역시 관할 자치단체별(76개) 생활폐기물봉투 사용규격 현황(1)>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서울특별시 (25개 구)	3	5	25	25	25	19	25	17	21
부산광역시 (16개 구)	-	4	16	16	16	15	16	14	12
대구광역시 (7개구 1군청)	-	2	8	8	8	8	8	3	8
인천광역시 (8개구 2군)	1	2	10	10	10	-	10	1	10
광주광역시 (5개 구)	-	-	5	5	5	5	5	4	5
대전광역시 (5개 구)	-	1	5	5	5	-	5	2	5
울산광역시 (4개구 1군)	-	-	5	5	5	-	5	1	5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	-	2	2	2	2	2	-	-
합 계 (76자치단체)	4	14	76	76	76	49	76	42	66
사용 비율	5.3%	18.4%	100%	100%	100%	64.5%	100%	55.3%	86.8%

※ 상기 숫자는 동일광역시 중 해당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광역시 관할 자치단체별(76개 자치구) 생활폐기물봉투 사용규격 현황(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라.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가격 상이

- 종량제봉투 가격은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봉투제작비용, 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위임

$$\text{※ 종량제봉투가격}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 } \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text{※ 주민부담률(\%)} = \text{종량제봉투 판매수입} \div \text{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times 100$$

$$\text{※ 판매수수료}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 } \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 \times \text{판매수수료 요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 요율})\}$$

- 동일 광역시 내에서 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가격을 대부분 통일화 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가격 통일화를 진행 중임
 - 서울특별시는 2016년 말까지 전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화 할 예정이나, 현재 25개 자치구 중 4개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이

- 부산·인천광역시는 각각 2개의 자치단체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르고, 그 외 광역시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모두 동일

<기초자치단체별 일반용 종량제봉투 평균가격>

(단위: 매, 원)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서울특별시 (25개구)	영등포구	-	-	100	200	400	600	1,100	1,520	2,030
	동작구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서초구	60	80	100	190	370	-	880	-	-
	강남구	-	-	100	190	370	550	900	1,440	1,920
	기타 21개 구	60	80	120	220	440	660	1,100	1,650	2,220
부산광역시 (16개구)	강서구	-	-	150	270	510	780	1,240	1,830	2,430
	기장구	-	-	150	300	590	-	1,470	-	2,940
	기 타 14개 구	-	140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대구광역시 (8개구)		-	100	150	290	560	850	1,400	-	2,770
인천광역시 (8개구, 2개 군)	남동구	-	-	210	310	620	-	1,540	-	3,070
	강화군	50	70	120	240	480	-	1,200	-	2,400
	기 타 6개구·군	-	-	160	310	620	-	1,540	-	3,070
광주광역시 (5개 구)		-	-	200	380	740	1,110	1,830	2,730	3,640
대전광역시 (5개 구)		-	100	170	330	660	-	1,650	2,480	3,300
울산광역시 (4개 구, 1개 군)		-	-	160	310	600	-	1,490	2,220	2,960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		-	-	90	180	동:500 읍·면:300	750	동:1,250 읍·면:800	-	-

※ 기초자치단체별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세부현황: 붙임 2 참조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은 도·농 복합도시 및 환경관련 처리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종량제봉투 인상곤란

※ 인천광역시는 남동구를 시작으로 종량제봉투 인상 추진 중

2.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및 판매소 이용 등 불편**

【현황 및 문제점】

가.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및 정산방법 불편

- (이용자) 종량제봉투 교환·환불제도의 불편
 - 종량제봉투 교환·환불은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가능하나, 소액 영수증이고 장시간 경과 후 사유발생 등으로 교환·환불곤란
 - 종량제봉투 구매는 낱장 단위가 가능하나, 교환·환불은 묶음 단위로만 가능하여 잔여량 잔존
- (판매점)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만제기 및 위조봉투 검증곤란
 - 종량제봉투 구매는 신용카드로 하고, 환불은 현금 원칙으로 운영함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판매점에서 불만제기
 - 판매점에서는 위조봉투에 대한 판별능력이 부족하여 불법유통 경로로 이용될 우려요소 내재
- (자치단체) 종량제봉투 정산제도의 현실과 괴리에 따른 도입기피
 - 종량제봉투 정산시스템 구축은 정산 자치단체 수요의 다량*, 인력 및 업무증가,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에서 도입 기피

* 정산 자치단체의 수: 전국 226개(시 75, 군 82, 구 69)의 자치단체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요건기준 미비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가능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 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이용불편

※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군·구(읍·면·동) 직영판매, 금융기관 위탁판매, 청소 대행업체 판매, 민간 위탁판매 방식 중 자치단체가 결정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정요건(업종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판매소로 지정을 받거나,
- 일반 국민이 출입을 기피하는 유흥업종 등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이용불편

IV. 개선방안

1.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제고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 기초자치단체(구·군)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통일되지 않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가격을 통일

-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및 수입금관리 등은 현행대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제한만 완화하여 사용편의 제고

※ 타 시·군 등의 자치단체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로 전입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사용하도록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현상 사전예방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 종량제봉투 규격은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가급적 통일화 및 소형화·다양화를 추진하여 선택기회 확대제공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을 제작·판매하되,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통일화하여 혼란예방

예시) 종량제 봉투규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또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 <사례를 통한 종량제봉투 단일화 효과분석>

- 광역시 내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의 단일화를 시행하여도 자치단체별 종량제봉투 판매량, 처리량, 청소재정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부산광역시)

- 종량제봉투 사용 단일화 후, 자치단체별 판매량 6.4%, 처리량 3.1% 증가 하였으나, 인구 0.7%, 세대수 1.9% 증가율을 고려하면 변화율은 미미
- 종량제봉투 사용의 단일화 이후, 자치단체별 청소재정 자립도(일반 쓰레기 수수료와 가정용 쓰레기 처리비용의 변화)는 연간 약 6.8% 증가(강서구, 기장군 제외)

(제주시)

- 종량제봉투 판매량 연평균 11.4%, 수거량 연평균 0.14%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 연평균 2.6%, 세대수 3.1%, 여행자 수는 12.6% 증가
- 종량제봉투 가격이 읍·면·동에 따라 다르나,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전체 평균 약 14.5% 증가한 반면 청소재정 자립도는 5.1% 감소

(서귀포시)

- 종량제봉투 판매량 연평균 16.1%, 수거량 연평균 11.7%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 2.8%, 세대수 1.9%, 여행자 수는 12.6% 증가
- 종량제봉투 가격이 읍·면·동에 따라 다르나,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연평균 20.0%, 청소재정 자립도는 7.8% 증가

-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연평균 약 255만 명(104만 세대)에게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성 제고**

- 전입지에서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해소

- 전출지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교환·환불 불편 최소화

○ 스티커 사용 최소화로 예산절약, 환경오염 감소 및 자원절약

- 동일 광역시 내에서의 전출입자를 위한 연간 약 1,037만~2,073만 매의 스티커 제작·소각 불필요에 따른 예산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
- 동일 광역시 내에서 전출입하는 연간 약 104만 세대의 종량제 봉투 잔량해소로 자원절약

<종량제봉투 사용 단일화로 인한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이용자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의성 제고 · 동일 광역시 내에서의 교환·환불 불편해소 · 동일 광역시 내에서의 스티커부착 불편해소 - 종량제봉투 잔여량 해소로 경제적 부담감소 	-
자치단체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봉투 사용구역에 대한 민원해소 - 자치단체의 스티커 제작 예산절약 및 업무량 감소 - 동일 광역시 내에서는 종량제봉투 정산시스템 구축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처리 비용은 증가에 따른 재정자립 감소 우려
환 경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 동일 광역시내에서의 종량제봉투 잔여량 해소로 자원절약 	-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 요건 마련

-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출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편의 제고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부적합한 업종(예시)>

1.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 자치단체의 조례에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고

<종량제 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예시)>

1.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지정표시,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보고
5. 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봉투의 교환 및 현금교환
7. 낱장판매 및 환불 거절
8.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등

V.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 7. 25.
- 대상기관 :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7. 8. 25.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input type="checkbox"/>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제고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 전출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개선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관련조례 개정 등	
○ 종량제봉투 규격 현실화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관련조례 개정 등	
<input type="checkbox"/>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용편의 제고		
○ 종량제봉투 판매소 세부지정요건 마련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관련조례 개정 등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마련	기초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관련조례 개정 등	